

대법원 2004. 1. 29 2003다52210 판결 [소유권말소등기] [공2004.3.1.[197],397]

판 시 사 항
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소극) 및같은 조 제3항에 의한
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설정받거나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을 한 경우,
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(적극)

판 결 요 지

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(2003. 5. 29.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
전의 것)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
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,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
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,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
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.

참 조 조 문

구 주택건설촉진법(2003. 5. 29.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) 제32조의3

재판경과

대법원 2004. 1.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3. 9. 2 선고 2002나66207 판결

서울지방법원 2002. 10. 15 선고 2002가합32870 판결

참조판례

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8804, 38811, 38828 판결
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2다43516 판결

따름판례

창원지방법원 2012. 2. 2 선고 2010가합6482 판결, 대법원 2004. 11. 26 선고 2004다46649
판결

전문

【원고, 상고인】 쌍□건설 주식회사

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×양 담당변호사 강●현 외 2인)

【피고, 피상고인】주식회사 한▽▽▽신탁

(소송대리인 변호사 박♡웅 외 3인)

【원심판결】서울고법 2003. 9. 2. 선고 2002나6620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(2003. 5. 29.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(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8804, 38811, 38828 판결, 2002. 12. 6. 선고 2002다43516 판결 등 참조),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,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.

같은 취지에서 위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, 위 법 제32조의3 제1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용우(재판장)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(주심)